

	사 규	표준번호	FRT-1043
		제정일자	2013. 01. 02
	서면발급 및 보존 규정		개정일자
	Rev	0	Page 1/13

## 서면발급 및 보존 규정

※ 관련: 공정거래위원회 ‘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’

### 제 1 장 총 칙

#### 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 과정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에프알텍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회사와 거래업체가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, ‘하도급법’이라 한다)상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원활히 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#### 제 2 조 (적용범위)

이 규정은 회사와 중소기업간 계약 체결 및 거래 과정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하여 규정한 사항으로서 모든 하도급법 적용거래에 적용한다.

#### 제 3 조 (구성)

이 규정은 ①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각종 서면의 발급에 관한 부분, ② 발급한 서면의 보존에 관한 부분, 그리고 ③ 서면 발급 및 보존 관행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책의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부분 등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다.

#### 제 4 조 (용어정리)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

- 기술자료 :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관련 자료, 제조·시공·용역수행 방법, 장비 제원 및 설계도면, 기타 사업자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·자료 등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, 수급사업자가 비밀이라고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한 경우 또는 당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한 경우,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한 경우 등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·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자료

	사 규	표준번호	FRT-1043
		제정일자	2013. 01. 02
	서면발급 및 보존 규정		개정일자
	Rev	0	Page 2/13

## 제 2 장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각종 서면의 발급에 관한 사항

회사는 하도급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.  
발급대상 서면은 다음 표 1과 같다.

<표 1 : 발급대상 서면>

일련번호	발급 대상 서면	비고
1	기본계약서(추가, 변경 계약서 포함)	하도급법 제 3 조
2	하도급계약 확인서면	하도급법 제 3 조 제 6 항
3	감액 서면	하도급법 제 11 조
4	기술자료 제공 요구서	하도급법 제 12 조의 3
5	목적물 등 수령증명서	하도급법 제 8 조
6	검사결과 통지서	하도급법 제 9 조
7	계약변경 내역 통지서	하도급법 제 16 조

## 제 5 조 (하도급 계약서의 발급)

### 1.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(하도급법 제 3 조)

- 가. 회사는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, 수리, 시공 또는 용역 수행(이하 ‘제조 등’이라 함)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, 수량, 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- 나.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 변경 또는 추가 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, 변경 서면을 작성, 발급하여야 한다.

### 2. 서면 기재사항

하도급 계약 서면에는 실제 거래의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항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.

	사 규	표준번호	FRT-1043
		제정일자	2013. 01. 02
	서면발급 및 보존 규정		개정일자
	Rev	0	Page 3/13

- 가. 위탁일,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, 수량 및 단가, 목적물 등을 납품, 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,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, 하도급 대금(건설공사의 선금금, 기성금, 준공금 등)과 지급 방법, 지급 기일
- 나. 회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, 수량, 제공일,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기일
- 다.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을 위탁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 요건, 방법 및 절차 등

#### 3. 서면발급 시점

- 가. 원칙적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위탁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 
지체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- 나. 회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서면계약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 
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다음 각 항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 
발급하여야 한다.
  - 1) 제조위탁 :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
  - 2) 수리위탁 :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
  - 3) 건설위탁 : 수급사업자가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
  - 4) 용역위탁 :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

#### 4. 서면발급 방법

- 가. 회사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가 서명(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 
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)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- 나.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서면미발급에  
해당한다.
- 다.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.
  - 1)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 
기록하는 방법(예 : 전자메일)
  - 2)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  
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(예 : 웹)
  - 3) 플로피 디스크, CD-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

	사 규	표준번호	FRT-1043
		제정일자	2013. 01. 02
	서면발급 및 보존 규정		개정일자
	Rev	0	Page 4/13

## 5. 예 외

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 및 서면발급시점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.

### 가.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

- 1) 회사가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고,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.

### 나. 하도급 거래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업종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계약 성립과 유지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

- 1)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(Fax), 기타 전기. 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
- 2)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,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. 작업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경우
- 3)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제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출한 물품매도확인서(offer sheets)를 개별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
- 4) 추가 공사의 위탁과 관련하여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의 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경우

### 다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서면 미발급에 해당한다.

- 1)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
- 2)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

## 6. 특 칙

### 가. 하도급계약의 추정

- 1) 회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 3 조 제 2 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(제 3 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)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, 하도급대금, 위탁받은 일시, 회사와

	사 규	표준번호	FRT-1043
		제정일자	2013. 01. 02
	서면발급 및 보존 규정		개정일자
	Rev	0	Page 5/13

수급사업자의 사업자 명과 주소, 기타 회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

- 가) 이 경우, 수급사업자는 [별지 1] “위탁내용 확인 요청서”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.
- 2) 회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 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(否認)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.
  - 가) 이 경우, 회사는 [별지 2] “위탁내용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”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.
  - 3) 만약 회사가 15 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.
  - 4)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 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회사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하되,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(전자우편은 제외한다)으로 하여야 한다.

#### 나. 공동도급계약의 경우

- 1)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사 전원이 연명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.

### 제 6 조 (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)

#### 1.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(하도급법 제 11 조)

- 가. 회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“위탁을 할 때” 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- 나.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. 운송. 검수. 반품 등의 거래조건, 규격. 재질,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, 단가. 수량 등

	사 규	표준번호	FRT-1043
		제정일자	2013. 01. 02
	서면발급 및 보존 규정		개정일자
	Rev	0	Page 6/13

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 
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수급사업자에게  
통지되는 시점을 “위탁을 할 때”로 본다.

## 2. 서면 기재사항

- 가. 회사가 하도금 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,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, 감액 금액, 공제 등 감액 방법,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.

## 3. 서면발급 시점

- 가. 회사가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수급사업자에게 감액 서면을  
발급하여야 한다.

## 4. 서면발급 방식

- 가. 회사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금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 
대표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가 서명(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)  
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.

- 나. 회사가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, [별지 3] “하도급대금 감액서면”을 표준 양식으로  
사용한다.

- 다.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.

- 1)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 
기록하는 방법(예 : 전자메일)
- 2)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 
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(예 : 웹)
- 3) 플로피 디스크, CD-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

## 5. 예외

- 가. 회사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 
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. 다만 이 경우에도  
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,  
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.

	사 규	표준번호	FRT-1043
		제정일자	2013. 01. 02
	서면발급 및 보존 규정		개정일자
	Rev	0	Page 7/13

## 제 7 조 (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)

### 1.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(하도급법 제 12 조의 3)

가. 회사는 아래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- 수의계약, 경쟁입찰(일반경쟁, 제한경쟁, 지명경쟁 등)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기술력 평가, 주문품의 기준가격 마련, 제안서 검토, 공동기술개발, 발주처의 제안요청서(RFP) 요구조건 충족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
- 회사가 하도급 거래 도중에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, 품질관리, 성능테스트, 공동특허출원, 특허출원지원, 공동기술개발,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원가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
- 기술자료 임차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임차계약 상의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

### 2. 서면 기재 사항

가.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에는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, 요구 목적,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\*, 권리귀속관계\*, 기술자료의 대가, 요구일, 인도일, 인도방법, 기타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\*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: 기술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

\* 권리귀속 관계 :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, 상호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,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인지 여부,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등

### 3. 서면발급 시점

가.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, 요구 목적, 요구일, 인도일, 인도방법,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, 권리귀속관계, 기술자료의 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.

	사 규	표준번호	FRT-1043
		제정일자	2013. 01. 02
	서면발급 및 보존 규정		개정일자
	Rev	0	Page 8/13

#### 4. 서면발급 방법

- 가. 회사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 위임 받은 자의 서명(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) 또는 기명날인한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- 나. 회사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, 가급적 [별지 4] “기술자료 요구서” 「기술자료 제공요구. 유용행위 심사지침」(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 115 호)의 기술자료 요구 표준 서면양식)를 표준양식으로 사용한다.
- 다. 회사는 상기 표준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별도 계약 서면에는 상기 ‘2’ 항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
- 라.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.
  - 1)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(예 : 전자메일)
  - 2)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(예 : 웹)
  - 3) 플로피 디스크, CD-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

#### 5. 예 외

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기한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.

- 가.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 사항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,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.
- 나.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에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, 요구 목적, 비밀유지 사항, 권리 귀속 관계,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기술자료 요구일, 인도일,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	사 규	표준번호	FRT-1043
		제정일자	2013. 01. 02
	서면발급 및 보존 규정		개정일자
	Rev	0	Page 9/13

## 제 8 조 기타 서면의 발급

### 1.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(하도급법 제 8 조)

- 가. 회사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납품,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(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)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- 나. 회사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(하도급법 제 7 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) 수급사업자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### 2.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(하도급법 제 9 조)

- 가. 회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나. 회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 일 이내에 검사결과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.
  - 1) 여기서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, 수리,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,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.
- 다. 다만, 원사업자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 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.
  - 1)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 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
  - 2)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
  - 3)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
- 라.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.

### 3.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 발급(하도급법 제 16 조)

- 가.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	사 규	표준번호	FRT-1043
		제정일자	2013. 01. 02
	서면발급 및 보존 규정		개정일자
	Rev	0	Page 10/13

나. 회사는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#### 4. 서면발급 방법

가. 위 1. 2. 3. 의 경우, 회사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서명(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)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나. 위 1. 2. 3. 의 경우,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.

- 1)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(예 : 전자메일)
- 2)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(예 : 웹)
- 3) 플로피 디스크, CD-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

#### 제 3 장 서면의 보존에 관한 사항

#### 제 9 조 서면의 보존

회사와 수급사업자는 모두 상기 「제 2 장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의 각종 서면의 발급에 관련 사항」에 열거된 서면과 기타 하도급법 시행령 제 6 조(서류의 보존) 제 1 항 각호의 서면을 보존하여야 한다. 보존하여야 하는 서면은 다음 표 2 와 같다.

<표 2 : 보존대상 서면>

일련번호	보존 대상 서면	비 고	
1	기본계약서(추가. 변경 계약서 포함)	하도급법 제 3 조	의무발급서면
2	하도급계약 확인서면	하도급법 제 3 조 제 6 항	
3	감액 서면	하도급법 제 11 조	
4	기술자료 제공 요구서	하도급법 제 12 조의 3	
5	목적물 등 수령증명서	하도급법 제 8 조	
6	검사결과 통지서	하도급법 제 9 조	

	사 규	표준번호	FRT-1043
		제정일자	2013. 01. 02
	서면발급 및 보존 규정		개정일자
	Rev	0	Page 11/13

7	계약변경 내역 통지서	하도급법 제 16 조	
8	목적물 등의 검사결과, 검사 종료일 등이 기재된 서류	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제 2 호	
9	하도급대금의 지급일,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(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, 금액 및 만기일 포함)이 기재된 서류	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제 3 호	
10	선금금 및 자연이자, 어음할인료 및 자연이자, 관세 등 환급액 및 자연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	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	
11	회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, 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	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제 5 호	주요 하도급 거래내용등 기재서류
12	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	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제 6 호	
13	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,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,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	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제 7 호	
14	입찰명세서, 낙찰자결정품의서, 견적서, 현장설명서,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	시행령 제 6 조 제 1 항 제 8 호	

가.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. 품의. 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.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.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도 동일하다.

	사 규	표준번호	FRT-1043
		제정일자	2013. 01. 02
	서면발급 및 보존 규정		개정일자
	Rev	0	Page 12/13

나. 회사와 수급사업자는 당사자 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상기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. 여기서,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이라 함은 다음의 기일을 의미한다.

- 1) 제조위탁. 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. 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 :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
- 2)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 :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역무 공급을 완료한 날
- 3) 건설위탁 : 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
- 4) 하도급계약이 종료 해지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경우 : 해지 또는 중지된 날

#### 제 4 장 서면발급 및 보존관행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내용과 절차

##### 제 10 조 서면발급 및 보존관행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

###### 1. 서면미발급 또는 미보존 사업자에 대한 교육이수 명령

가.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가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또는 보존의무를 위반하여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 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교육이수 명령지침’에 따라 이 가이드라인 내용을 포함하는 하도급법 준수를 위한 교육이수 명령을 부가할 수 있다.

###### 2. 서면미발급 또는 미보존 사업자에 대한 교육이수 권고

가.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가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또는 보존의무를 위반하여 경고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이 가이드라인 내용을 포함하는 하도급법 준수를 위한 교육의 이수를 권고할 수 있다.

###### 3. 반복적으로 서면미발급(또는 미보존) 혐의가 적발된 사업자에 대한 교육이수 권고

가.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제 22 조의 2에 따라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 결과 반복적으로 서면미발급 혐의가 적발된 사업자에 대하여 이 가이드라인 내용을 포함하는 하도급법 준수를 위한 교육의 이수를 권고할 수 있다.

나. 하도급법상 서면미보존 혐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권고할 수 있다.

###### 4. 장기간 상습적으로 서면미발급(또는 미보존) 혐의가 적발된 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

가.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제 22 조의 2에 따라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 결과 장기간 상습적으로 서면 미발급 혐의가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.

	사 규	표준번호	FRT-1043
		제정일자	2013. 01. 02
	서면발급 및 보존 규정		개정일자
	Rev	0	Page 13/13

## 5.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하는 교육의 대상과 방법

- 가.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하는 교육은 당해 업체의 하도급 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. 임직원에는 당해 업체의 최고경영자(CEO)를 포함한다.
- 나. 위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하는 교육은 당해 업체의 최고 경영자(CEO) 및 하도급 업무 담당 임직원을 각각 대상으로 한다.
- 다. 원사업자는 다음의 기관에서 실시하는 하도급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
  - 「민법」 제 32 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경쟁연합회
  -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 48 조의 2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
  - 「산업발전법」 제 32 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
  -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 50 조에 따른 건설업자단체
  -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 3 조제 1 항제 4 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
  -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
- 라.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권고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 교육시간은 최소한 3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.

## 6. 교육 참여의 효과

- 가.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하는 하도급법 교육을 이수한 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벌점을 경감한다.

## 7. 교육이수 권고를 불이행하는 경우

- 가.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고도 하도급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행위 직권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당해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포함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